



교육감 규정

번호: A-831

제목: 학생 대 학생 성폭력

항목: 학생

발행: 2021 년 10 월 7 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9 년 10 월 23 일 수요일자 규정 A-831 을 대체한다.

본 규정은 학생 대 학생 성폭력에 대한 고발, 조사 및 해결에 관한 절차를 수립한다.

변경내용:

- 성폭력 예방(Sexual Harassment Prevention: SHP) 담당관은 본 규정에서 다른 주제들과 관련된 리소스 역할임을 명확히 한다. (개요)
- 온라인 학습 중에도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은 금지된다는 내용 추가. (개요, 섹션 I.B)
-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의 정의 개정. (섹션 I.A)
- 온라인 상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예로 문자, 앱, 채팅방 및 게임 시스템 추가. (섹션 I.E)
- 섹션 II.C 에 명시된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에 관한 조항 추가.. (섹션 II.D)
-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학생 대 학생 성폭력 의심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내용 추가. (섹션 II.E)
- “조사 파일” 항목 제거. (섹션 II.J)
-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측 부모(들)과 학교장/지정인이 대화 해야한다는 섹션 II.L 의 내용에 정보 추가. (섹션 II.L)
- 교육감 규정 A-412 에 참고 내용을 추가하고, “보로/시 학생 서비스 오피스 디렉터”를 “보로 안전 디렉터”로 대체. (섹션 II.M)
- 증인 진술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닌 “준비하도록 부탁”하는 것으로 변경. (섹션 III.A.5)
- 학교 소셜워커, 가이던스 카운슬러, 심리상담사 또는 기타 적절한 교직원은 “가이던스 중재”의 예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섹션 IV.B)

- 교직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에 근거하여,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Section 504 항 계획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성립된다는 점을 명시한 항목에 정보를 추가. (섹션 IV.D)
-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에서 제작한 성폭력 포스터를 “눈에 띄게 게시”한다는 의미는 “학생, 학부모 및 직원들이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는 의미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들은 가급적이면 학년도 초반에 이 포스터를 게시하게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섹션 V.A)
- 각 학교는 반드시 매년 OSYD 에서 준비한 문서를 배포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밖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 추가. (섹션 V.B)
- 각 학교장/지명인은 되도록이면 학년도 초반에 SHP 담당관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섹션 V.C)
- 최소 한(1) 명의 SHP 담당관이 OSYD 에서 제공하는 SHP 필수 연수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섹션 V.F)
- 각 학교장들의 통합 학교 및 청소년 발달 계획 연례 제출 의무를 재정비하고 갱신함. (섹션 VI)
- 비밀 유지에 관한 섹션 VII 에 “지원 및 중재 제공을 포함”이라는 문구 추가.
- 본 규정 전반에 걸쳐, 교육감 규정 조항이 언급될 때마다 해당 규정으로 가는 하이퍼링크 추가.



교육감 규정

번호: A-831

제목: 학생 대 학생 성폭력

항목: 학생

발행: 2021년 10월 7일

요약

뉴욕시 교육청(DOE)에서는 학생 대 학생의 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용인되지 않는 행동으로서, 이것은 교육 과정을 방해하거나 확실히 방해할 위험이 있거나, 학교 공동체의 보건, 건강, 도덕 또는 안녕에 해를 끼치거나 확실히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학교, 학교 수업시간, 온라인 학습 중, 학교 방과 전 및 후, 학교 건물 내, 학교 후원 행사 또는 DOE가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은 물론 학교 건물이 아닌 타 장소에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다음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규정에 관한 연수를 받고 학생 대 학생 성폭력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본 규정에서 다룬 주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담당자로서 성폭력 방지 담당관의 지정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학생 대 학생 성폭력에 관한 신고, 조사, 통지 및 추후절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에 가담한 학생은 뉴욕시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품행 기대치(훈육 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에 따라 적절한 중재와 지원,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및 증인들은 적절한 중재 및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 대 학생 차별 행위(성별, 성적체성, 성적 표현 및 성지향에 따른 차별 포함), 괴롭힘, 도발 및/또는 따돌림에 관한 신고는 교육감 규정 A-832을 참고하십시오.

I. 정책

- A. DOE는 학생 대 학생의 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또 다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이나 의사소통을 통해 심각하고 만연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본 규정 위반입니다:

- (1)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거나 도발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
- a. 어떤 학생의 교육 수행도에 영향을 주거나 교육 프로그램(예, 학생이 수업에 꾸준히 출석하지 않음, 학생의 학업 수행도 또는 학급에서의 수행도에 변화가 있음) 또는 학교 후원 액티비티(예, 학생이 더 이상 과외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도에 변화)에 참여하거나 이로부터 혜택을 입을 능력 또는 기회에 부당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거나 이와 유사한 효과를 초래. 또는
 - b. 학생의 정신, 정서 또는 신체적 웰빙에 부당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줌(예, 학교에서 학생의 행동이 영향을 받음, 학생이 위축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킴, 학생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집중력이 흩어진 모습을 보임). 또는
 - c. 학생이 본인의 신체적 안전을 두려워하게끔(예, 학생 본인 및/또는 타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해당 학생의 안위에 대한 걱정을 표시한 적이 있음) 상당한 원인제공을 하거나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타당하게 짐작할 수 있음. 또는
 - d. 학생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정서적 해를 입혔거나 충분히 입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또는

그 외 학생의 교육 기회에 부정적으로 영향.

- B.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은 용인되지 않는 행동으로서, 이것은 교육 과정을 방해하거나 확실히 방해할 위험이 있거나, 학교 공동체의 보건, 건강, 도덕 또는 안녕에 해를 끼치거나 확실히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학교, 학교 수업시간, 온라인 학습 중, 학교 방과 전 및 후, 학교 건물 내, 학교 후원 행사 또는 DOE 가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은 물론 학교 건물이 아닌 타 장소에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 C. 학생 대 학생 성폭력에 관해 선의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학생이나 부모, 또는 DOE 직원에 대한 보복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DOE 정책입니다. 보호된 활동 참여로 인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부정적 행위는 보복으로 간주됩니다. 보복 행위가 의심될 때에는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적절한 징계에 처해질 것입니다.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보호자(들), 학생과 부모 관계나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학생이 18 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합니다.

- D.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은 학생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원치 않는 행위 및/또는 성적인 의사전달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연루된 모든 학생들의 성별, 성정체성, 성취향 또는 성 지향에 관계 없이 모두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은 하나의 고립된 사건 또는 일련의 연관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 E.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으로, 또는 글이나 전자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괴롭힘에는 다음과 같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것들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휴대 전화, 이메일, 개인 디지털 보조장치, 문자, 앱, 무선 핸드헬드 디바이스, 소셜미디어, 채팅방, 게임 시스템, 블로그 등.
- F.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성적 행위를 하거나 호의를 봐주도록 압력을 넣거나 요구하는 것;
 - 성적으로 폭력이나 강압적 행동(예, 공격, 강간)에 가담, 또는 어떤 사람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압하는 것;
 - 다른 사람의 신체나 옷을 만지는 것, 쓰다듬기, 키스, 꼬집기, 꺾기, 또는 손으로 쓸고 지나가기 등의 성적인 성격의 신체행위에 가담하는 것;
 - 성적인 말, 비유, 의견, 모욕, 위협, 놀리기 및/또는 농담을 하거나 성에 관해 원치 않는 질문을 하는 것;
 - 어떤 사람의 신체에 대해 말이나 글, 또는 그림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
 - 외설적인 몸짓을 취하는 것;
 - 다른 사람을 스토킹 하는 것. 테크놀로지 사용을 이용한 스토킹 포함;
 - 결눈질 하기, 성적으로 추근대기, 또는 구애;
 - 성적인 내용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
 - 성적이거나 외설적인 형상, 사진, 그림, 비디오, 오디오 등을 허가 없이 기록, 게시, 전시 및/또는 배포하는 것;
 - 현재 데이트 상대나 앞으로 가능성 있는 데이트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위협 또는 실질적인 신체적,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하는 행위(데이트 성폭력);

II. 신고 절차

- A.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신고(report)"란,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이나 타인(예, 교직원, 부모 및 기타 학생)이 학생 대 학생 성폭력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B. 각 학교 교장은 반드시 최소 일(1)명의 교직원을 성폭력 방지 (SHP) 담당관으로 임명하여 학생 대 학생 성폭력 신고를 접수할 책임을 부여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관련 문제를 상의할 책임자로 정해야 합니다. SHP 담당관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행정가, 수퍼바이저, 교사, 가이던스 카운슬러, 학교 심리상담사나 소셜워커로서 해당 학교 풀타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1. 어느 경우에도 학교에는 반드시 섹션 V.D 에 명시된 연수를 받은 SHP 담당관을 두어야 합니다. SHP 담당관이 사직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책임지고 새로운 SHP 담당관을 임명하고 그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학교장은 즉시 임시 SHP 연락담당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2. 해당 학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SHP 담당관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SHP 담당관이 복직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임시 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 C.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을 목격하였거나, 관련 정보나 아는 바가 있거나, 어느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통지를 받은 교직원은 누구든 막론하고 즉시 해당 사안을 일(1) 수업일 이내에 SHP 담당관이나 학교장/대리인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 보고를 한지 이(2) 수업일 이내에 **불만 신고 양식** (<https://cdn-blob-prd.azureedge.net/prd-pws/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1-reporting-form.pdf?sfvrsn=43ca449> 에 있음)에 사건 내용을 설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종이로 된 신고 양식이 언제든지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D. 상기 섹션 II.C 에 명시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직원은 처벌에 처해지며, 여기에는 해임, 의무 연수 및/또는 기타 후속 조치가 포함됩니다.
- E.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을 신고하려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외의 개인은 **불만 신고 양식**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student-complaint-reporting-form> 에 있음)을 포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학교장/대리인, SHP 담당관 또는 기타 교직원에게 신고하고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통지(전화, 이메일 또는 아래 섹션 ix 에 나온 정보) 또는 [온라인 \(https://www.nycenet.edu/bullyingreporting\)](https://www.nycenet.edu/bullyingreporting)으로 할 수 있다.

- F. 다른 학생에 의해 성적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 또는 이러한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학생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G. 학교에 신고하기가 꺼려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다면,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OSYD) 이메일 RespectForAll@schools.nyc.gov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학생/학부모가 보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본 규정서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학생/학부모가 이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으나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또는 보고 자체가 꺼려지는 학생/학부모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OSYD 에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 H. 학생, 학부모, 교직원 외 개인 누구든 익명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는 익명의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사가 실시되고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 I. SHP 담당관은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학교장/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J. 학교장/대리인은 모든 문서상의 신고서(예, 이메일, 불만/신고 양식을 통해 제시된 신고)를 반드시 학교 조사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 K. 학교장/대리인은 모든 신고 내용을 접수한 지 일(1) 수업일 이내에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OORS)에 입력하고 즉시 섹션 III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L. 학교장/대리인은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의심 피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접수된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건이 조사될 것이라는 사실과 제공 가능한 지원과 중재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규정 사본 및 관련 자료(<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respect-for-all/respect-for-all-handouts> 에 있음)를 학부모에게 전자 형식 또는 학부모가 온라인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종이 사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 의무는 신고접수 즉시 이행되어야 하나, 학교장/대리인이 신고를 접수한 지 이(2) 수업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이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과 관련한 안전 문제를 학교장/대리인에게 표명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사생활 및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학부모(들)에게 통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대리인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시니어 현장 법률자문 및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또는 타이틀 IX 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M. 학교장/대리인이 신고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경찰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A-412 참고: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12-security-in-the-schools-english>). 학교장/대리인은 시니어 현장 법률자문 및/또는 보로 안전 디렉터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N. 신고 내용(들)의 성격과 심각도상 학교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DOE의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III. 조사

- A. 모든 신고 내용은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자 및 증인들은 반드시 별도로 면담해야 하며, 모든 면담 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하며 각 면담의 날짜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의 다음과 같은 조사 단계 착수는 가능한 빠를 수록 좋으며, 신고가 접수된 지 오(5) 수업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1. 의심 피해자 면담
 2. 의심 피해자에게 자세한 피해 내용의 설명을 포함한 가능한 상세한 내용,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 목격자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청
 3. 의심 가해 학생을 면담하고 신고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었다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조언;
 4. 고발당한 학생에게 사건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청
 5. 목격자가 있다면 면담하고 서면 진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
 6. 관련 증거 입수(예, 사진(들), 해당되는 경우 감시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 학교장/대리인은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뤄야 할 때 DOE 지침에 따르고, 필요하다면 보로 안전 디렉터 및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 B. 조사가 종결되면,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신고된 내용이 우세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 모든 증거 -관련자 및 증인들의 신뢰도와 이들이 제시한 증거의 퀄리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신고된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 C. 신고 내용이 입증되었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이 행위가 본 규정 위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위반 행위를 둘러싼

총체적인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사건 당사자 학생들의 나이
- 행위의 성격, 심각성 및 범위
-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행위가 공격적이었는지 여부;
- 상대가 원치 않는 행위였는지 여부;
- 행위의 빈도 및 지속 기간
- 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의 수
-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 행위가 발생한 장소
- 동일한 학생들이 포함된 기타 사건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 행위가 피해자의 교육(출석, 학업 수행도 또는 특별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행위가 피해자의 교내 행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대두되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웰빙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 D. 학교장/대리인은 조사가 종결되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OORS 에 입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신고된 행동이 본 규정을 실제로 위반했는지 여부. 이러한 정보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은 한, 반드시 학생 대 학생 성폭력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십(10) 수업일 이내에 OORS 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OORS 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와 보로/뉴욕시 오피스의 학생 서비스 디렉터에게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 E.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의심 피해자의 부모(들)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들)에게 서면으로 신고 내용 입증 여부 및 해당 행위가 본 규정 위반인지 판단한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신고 내용 중 하나라도 입증된 경우, 이러한 통지문에는 반드시 학부모가 학교에 연락하여 해당 사건 및 후속 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자녀에게 중재나 지원이 지원될 수 있는지 의논하도록 해야 한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은 한, 학부모들은 신고 접수 십(10)일 이내에 이러한 통지문을 받아야 합니다. 섹션 II.K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심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이러한 부모들에게는 본 문단에 명시된 정보도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 F. 섹션 III.E 에 명시된 정보는 학생 기록 정보 비밀 보호에 관한 주 및 연방법에 의거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는 피해자와 관련된 후속 조치,

중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만 통지될 수도 있고,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는 가해자와 관련된 후속 조치, 중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만 통지될 수 있습니다.

- G. 조사 전이나 조사 중의 어느 때라도 학교장/대리인이 학생(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 포함)들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학생의 학부모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고, 섹션 IV.B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절한 중재 및 지원이 문서에 기록되고, 시행되고 모니터 되며, 적절한 경우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IV. 후속 조치

- A. 학교장/지명자는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B. 조사가 종결되고 최종판단이 내려지면, 섹션 III 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해자 및 가해 학생, 증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경우 중재 및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 및 지원은 각 케이스 별로 판단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모니터 되고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중재와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교내 또는 학교 밖의 의료 서비스 의뢰;
 - 가이던스 중재(예, 학교 소셜워커, 가이던스 카운슬러, 심리상담사 또는 기타 적절한 교직원에게 의뢰)나 지역사회기관에 카운셀링이나 지원 및/또는 교육이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의뢰;
 - 학업 지원 및 조정(예, 수업, 런치/쉬는 시간, 방과 후 프로그램 스케줄 변경);
 - 개별 지원 계획 작성(한 학년도 동안 두 차례 이상 입증된 성폭력 피해자가 된 학생 및/또는 한 학년도 동안 본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개별 지원 계획을 작성하여 실행)

지원 및 중재에 관한 추가 정보는 훈육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재나 분쟁 해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 규정 A-101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101-admissions-readmissions-transfers-english>) 및 전학이 적절할 경우 전학 시행 규정 및 절차를 다룬 A-449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49-safety-transfers>) 참고)

- C. 학생이 자신의 데이트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위협 또는 실질적인 신체적, 성적 및/또는 정신적 학대의 패턴을 보일 경우,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학교 또는 지역사회 기관에 의뢰하여 카운셀링과 지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D.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이나 섹션 504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교직원이 생각할 경우, 교육감 규정 A-710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710>) 및 특수교육 표준 운영 절차 (SOPM, https://infohub.nyced.or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specialeducationstandardoperatingproceduresmanualmarch.pdf?sfvrsn=4cdb05a0_2)에 나온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E.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은 훈육 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에 명시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적절한 훈육 조치에 취해야 합니다.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43-3-5-04-english>).
- F.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모든 관련자 및 증인들에게 시행된 중재 및 지원과 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들)에게 내려진 모든 처벌 내용을 OORS 를 이용하여 정학 및 공청회 담당실 온라인 시스템(SOHO)에 입력해야 합니다.

V. 중재, 통지 및 연수

- A. 각 학교는 학생 대 학생 성폭력 관련 DOE 규정을 설명한 OSYD 제작 [성희롱 방지 포스터](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respect-for-all/respect-for-all-handouts)(<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respect-for-all/respect-for-all-handouts>)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잘 보이게(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본 공고문에는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도록 지정된 SHP 담당관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교내 어느 곳에서 본 규정 및 신고 양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지해야 합니다. 학교들은 가능한 학년도 초 이른 시기에 이 정보를 게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B. 각 학교는 반드시 매년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규정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OSYD 에서 제작한 자료를 배포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고 방법 및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학부모가 학교 밖에서 연락할 수 있는 곳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respect-for-all/respect-for-all-handouts>). 학교들은 반드시 이러한 정보가 학년도 중 등록하는 학부모/학생들에게도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 C. 모든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SHP 담당관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가 학교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며,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것을 알고 있는지 최소 연 1 회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에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나 가정 통신문 등이 있으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학교들은 가능한 학년도 초 이른 시기에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D. 각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매 학년도 10 월 31 일 이전 본 규정서에서 명시하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해 OSYD 에서 제작한 정보와 연수를 학생 및 교직원(비교직 직원 포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E. 각 학교장은 반드시 매 학년도 10 월 31 일까지, 성적 괴롭힘(성폭력 포함)피약 및 예방, 반차별 정책과 관련법, 불만처리 절차 및 각 관련자들에게 본 규정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에 관한 연수(OSYD 제공)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각 학교장은 반드시 매 학년도 10 월 31 일까지 섹션 III 에 명시된 조사를 실시하도록 임명된 사람 역시 이러한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F. 각 학교장은 섹션 V.D.에 명시된 학교 차원의 연수 외에도, 학교별로 최소 한(1) 명의 SHP 담당관이 OSYD 에서 실시하는 SHP 의무 연수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G. 본 규정서의 사본은 학부모, 교직원 및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VI.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

각 학교장은 반드시 매 학년도 10 월 31 일 까지 연례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에 다음과 같은 정보, 그리고 DOE 에서 명시한 기타 추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SHP 담당관(들)의 성명(들). 이 정보는 필요에 따라 갱신하십시오.
- B. 최소 한(1)명의 SHP 담당관이 상기 섹션 V.F.에 명시된 연수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증명.
- C. 본 규정 섹션 V.D 에 명시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와 연수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는 증명.
- D. 비교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 교직원이 상기 섹션 V.D 에 명시된 정보와 연수를 받았다는 증명.
- E. 섹션 V.D 필수로 규정된 연례 교직원 연수의 의제, 참석자 서명 명단 및 모든 연수 관련 문서 사본.

F. 학교장 및 본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교직원들이 섹션 V.E 에 명시된 연수를 받았다는 증명.

G. 성폭력 방지 및 대처 계획.

VII. 기밀 유지

모든 관련자 및 신고 관련 모든 증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DOE 정책입니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필요성은 반드시 경찰 조사에 협조할 의무, 공정 절차 제공 및/또는 조사와 신고 내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지원과 중재 제공 포함)를 취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적절한 상황 또는 법으로 규정한 바, 또는 학생의 안전이나 웰빙이 위협받는 상황 하에서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VIII. 대안 신고 절차

이러한 내부 절차는, 다음과 같은 외부 기관에 혐의 제기 등의 기타 해결 방안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민권담당실(Office for Civil Rights)

뉴욕사무소(New York Office)

32 Old Slip, 26th Floor

New York, NY 10005-2500

전화: (646) 428-3800

팩스: (646) 428-3843

[이메일: OCR.NewYork@ed.gov](mailto:OCR.NewYork@ed.gov)

<http://www.ed.gov/ocr>

IX. 문의

본 규정 관련 문의: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뉴욕시 교육청

52 Chambers Street – Room 218

New York, NY 10007

전화: (212) 374-6807

팩스: (212) 374-5751

[이메일: RespectForAll@schools.nyc.gov](mailto:RespectForAll@schools.nyc.gov)

Title IX Coordinator

65 Court Street, Room 200

Brooklyn, NY 11201

[이메일: Title_IX_Inquiries@schools.nyc.gov](mailto:Title_IX_Inquiries@schools.nyc.gov)

전화: (718) 935-4987